# 연구산업진흥법안 (이상민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959

발의연월일: 2020. 7. 15.

발 의 자:이상민·장철민·황운하

김진표・박영순・박성준

기동민 · 김종민 · 어기구

김회재 의원(10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정부는 R&D 생산성 제고 및 과학기술기반 서비스 일자리 창출을 위한 "연구산업 혁신성장전략"을 수립·발표하였음. R&D 연동산업 전체를 하나의 산업인 "연구산업"으로 묶어 관련 시장을 확대하고, R&D 활동을 보다 전문화된 주체들에게 분업화할 수 있는 개방형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마련해야할 필요성이 있음.

우리나라는 세계 5위 수준의 R&D 투자국('16년, 598억 달러)으로 R &D 생산성이 국가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큼. 이에 연구산업은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중요한 산업으로, 법에 근거를 둔 체계적인 육성이 필요함. 연구산업 중 주문연구·연구관리 분야에 해당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이 규정되어 있던 「이공계지원특별법」은 이공계인력의 활용 촉진을 위한 법으로서, 연구산업 전 분야를 포괄하는 산업 진흥법 마련이 필요함.

이에 「연구산업진흥법」을 통하여 연구산업 발전을 위한 산업시장

의 확대 및 산업 생태계의 체계적인 육성·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(안 제4조 등).

## 연구산업진흥법안

#### 제1장 총칙

- 제1조(목적) 이 법은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 활동과 관련된 연구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연구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연구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  - 1. "연구산업"이란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 활동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산업을 말한다.
    - 가. 영리를 목적으로 연구개발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거나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외부로부터 수탁받아 수행하는 산업
    - 나. 연구개발 기획, 연구개발의 관리 및 사업화 지원, 연구개발 관 런 기술정보의 조사·제공 등 연구개발 활동을 지원하는 산업
    - 다. 연구개발에 이용되는 장비와 주변시스템 및 부품을 개발하거 나 개조·유지·보수하는 산업
    - 라. 연구개발에 필요한 재료나 소재를 개발하여 제공하는 산업
  - 2. "연구사업자"란 연구산업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.

- 3. "전문연구사업자"란 연구사업자 중 제6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자를 말한다.
- 제3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연구산 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#### 제2장 연구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

- 제4조(연구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)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산업 진흥에 관한 중·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기 위하여 5년마다 연구산업 진흥 기본계획(이하 "기본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  -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  - 1. 연구산업 진흥 정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
  - 2. 연구산업의 분야별 진흥 정책
  - 3. 연구사업자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
  - 4. 연구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
  - 5. 연구산업 진흥을 위한 재원의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
  - 6. 그 밖에 연구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  - ③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・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5조(연구산업 관련 통계의 작성 등)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

연구산업 진흥을 위하여 연구산업에 관한 통계를 작성·관리할 수 있다.

-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을 위해 실 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, 필요한 경우 관련 공공기관 및 법인· 단체 등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.
- ③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 대상, 작성 주기 및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④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·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「통계법」을 준용한다.

#### 제3장 연구산업의 육성과 지원 등

- 제6조(전문연구사업자의 신고 등) ① 연구사업자 중 이 법에 따른 지원 등을 받고자 하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전문연구사업자로 신고하여야 한다.
  -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전문연구사업자는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.
  -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그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.

-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(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)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.
-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신고 및 변경신고의 요건, 신고수리의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7조(연구역량 강화 및 사업화 지원)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「과학기술기본법」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(이하 "국가연구개발사업" 이라 한다)에 대한 연구사업자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  -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산업의 기술 발전 및 고도화를 위한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을 추진하고, 기술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  -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거나 시책을 수립할 때 관련 연구사업자의 수요를 반영할 수있다.
- 제8조(연구장비성능평가)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사업자가 개발하여 연구개발에 이용되는 장비(이하 "연구장비"라 한다)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장비의 성능에 대한 평가(이하 "연구장비성능평가"라 한다)

를 실시할 수 있다.

- ② 정부는 연구장비성능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연구장비에 대하여 해당 연구장비의 보급 촉진 및 정부의 우선구매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- ③ 그 밖에 연구장비성능평가의 방법·절차·기준 및 평가 결과의 표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9조(연구산업진흥단지의 조성 등)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구사업자와 그 지원시설 등이 집단적으로 입주하여 있거나 입주하려는 지역을 연구산업진흥단지로 지정하거나 조성할 수 있다.
  - ② 제1항에 따른 연구산업진흥단지의 지정 요건과 그 밖에 지정 및 조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10조(국제협력과 해외진출 촉진)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 사업자의 국제적 역량 강화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 할 수 있다.
  - 1. 연구사업자의 해외진출에 관한 정보제공・상담・자문 및 교육
  - 2. 해외 연구사업자의 기술 정보 제공 및 연구사업자의 기술보호 지 원
  - 3. 연구사업자의 해외진출 관련 애로사항 발굴 및 해소 지원
  - 4.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연구사업자의 국제협력과 해 외진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-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그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.
- 제11조(공정한 시장환경의 조성) ① 연구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구사업자가 보유한 지식재산권의 일방적인 양도를 요구하는 등 그 지위를 이용하여 연구사업자에게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하거나 부당한 이득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.
  -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을 위반하여 그 지위를 이용하여 연구사업자에게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하거나 부당한 이득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위반행위의 중지 등 위반행위의 시정에 필요한조치를 명할 수 있다.
  -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산업 시장의 경쟁 환경 및 제1항과 관련한 불공정한 사례를 조사·분석하고 그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.
  -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사업자가 제공하는 제품 및 서비스 활용에 있어 공정한 거래질서를 구축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, 관련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표준계약서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.
- 제12조(세제지원)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연구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전문연구사업자 및 그 종사자에 대하여 「조세특례제한법」, 「지방 세특례제한법」, 그 밖에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,

법인세, 취득세, 재산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.

- 제13조(협회의 설립) ① 연구사업자는 연구산업의 역량 강화와 기반 조성 등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연구산업 협회(이하 "협회"라 한다)를 설립할 수 있다.
  - ② 협회의 업무와 정관 기재사항, 인가 절차 및 협회의 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  - ③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「민법」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- 제14조(전담기관의 지정 등)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산업의 진흥과 연구사업자의 육성 등을 위하여 「민법」 제32조 및 「공익 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(이하 "과학기술일자리 진흥원"이라 한다)을 연구산업 진흥 전담기관(이하 "전담기관"이라 한다)으로 지정할 수 있다.
  -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담기관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.
  - ③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### 제4장 보칙

- 제15조(업무의 위탁)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일부를 협회나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, 위탁한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- 제16조(보고 및 조사)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연구사업자 및 협회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사항을 보고·제출하게 하거나,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, 사무실 등에 출입하여 관련사항을 조사하도록 할 수 있다.
  -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장, 사무실 등에 출입하여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조사개시일 7일 전까지 조사의 일시·이유 및 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사전에 통지를 하는 경우 증거 인멸 등으로 인하여 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  - ③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.
- 제17조(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) 제15조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 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「형법」 제127조 및 제129조부 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.

#### 제5장 벌칙

- 제18조(벌칙) 제11조제2항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- 제19조(과태료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  - 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한 자
  - 2. 제16조제1항에 따른 보고·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·제출한 자
  - 3.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무원의 조사를 방해하거나 이에 응하지 아니한 자
  -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 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과·징수한다.

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